#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758

발의연월일: 2023. 2. 1.

발 의 자 : 윤준병 • 신정훈 • 양정숙

안규백 • 전용기 • 양경숙

이수진(비) • 주철현 • 김철민

김민철 • 위성곤 • 어기구

김승원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에 기부금을 낸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도록 하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목적으로, 10만원 이하 기부금액에 대하여는 110분의 100을 공제하며,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함.

그런데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기부금 세액공제 시행은 함께 시작되지 못하는 정책적 모순이 발생함. 이는 지난해 12월 세법개정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세액공제 시행시기를 2025년 1월 1일로 유예하였기 때문임.

이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조정하여 새로 시작한 고향사랑기부금제도를 성공적으로 활성화하려는 것임(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 정법률 부칙 제1조 등).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 중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을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58조의 개정규정: 2023년 3월 1일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거주자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 세기간에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 제1조(시행일)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 다. 1. 제14조, 제16조의4제2항 • 제 1. ----3항·제7항 및 제16조의5의 개정규정,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 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3항 • 제4항, 제27조, 제38조제1 항·제2항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 의 개정부분,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 의 개정부분, 제46조, 제46조 의2 및 제46조의3의 개정규 정, 제46조의7제1항의 개정규 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 정부분, 같은 조 제2항 · 제3 항의 개정규정, 제46조의8제1

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 소득"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8조의 개정규정, 제87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 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항·제6항,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9조, 제91조의 14, 제91조의17, 제91조의18 (제2항 및 제3항제5호는 제 외한다), 제100조의21, 제104 조의4의 개정규정, 제121조의 28제3항의 개정규정 중 "금 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제1 21조의30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 분,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 정 및 제146조의2제1항의 개 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2025년 1월 1일

<신 설>

<u>2.</u> (생 략) <신 설>

		- <u>같은</u>	조	제2항	· 제3
	<u>항의 개정규정</u>				
0		- A) 1	) -) <u>-</u>	, a)	000.1
<u>2.</u>		조의 기	H 정규	·정: 20	<u>023년</u>
	<u>3월 1</u> °				
<u>3.</u>	(현행	과 같음	-)		
제12	2조의2(	고향사	랑 7	기부금여	에 대
<u>한</u>	: 세액	공제에	관	한 적	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거주자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 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